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안전사고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3. 5.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계		4건	4	0					
1	♣♣♣♣♣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2	♣♣♣♣♣	@@@@@(%%,\$\$)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	1						
3	♣♣♣♣♣	&& 농어촌마을하수도 추진 부적정	1						
4	\$\$\$\$\$	■■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 1.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1
- 2. @@@@@(%%,\$\$)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5
- 3. && 농어촌마을하수도 추진 부적정(시정) 8
- 4. ■■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14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 정비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16. 12. 23. □□□□□□□(주)○○○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 정비공사	△△	▲▲ ▽▽	***정비 L=5.16km	7,274	4,789	2,485	2016.12.23. ~ 2024.2.28.	□□□□□□(주) ○○○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

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위 공사 추진 시 잡석을 구입하면서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비 00,000천 원¹⁾을 낭비하였다.

2. 토석정보공유시스템²⁾(TOCYCLE) 정보 미입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 ♣♣♣♣에서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토량이 00,000m³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대상임에도 감사일 현재(2023.4.21.)까지 토석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3. 공사비 과다 계상 및 공사 감독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4조, 제138조제1항 및

1) 설계 당시 사급자재 금액 000,000천원 (0,000m³×00,000원×제경비)과 관급으로 전환시 금액 000,000천원 (0,000m³×00,000원)의 차이로 산출

2)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감사일에(2023.4.18.)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 제방에 식생 호안블럭을 설치하면서 지장 전주가 간섭된다는 불명확한 사유로 제방 선형을 불량³⁾하게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에 따른 재시공 구간(사업비 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 진] *** 제방 선형 부적정 전경

*** 제방 부적정 근경	*** 제방 부적정 원경

3) 재시공 측정 NO 74 ~ NO 75, L=20.0m, 하천 폭이 불규칙하게 시공됨.

또한 위 부서에서는 당초 설계시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를 410m²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279m²로 설치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사일(2023.4.21.) 현재까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시공관리가 소홀한 *** 제방은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 급수구역 확장사업	송배·급수관로 (D250~16mm) L=94.456km, 가압장 11개소, 배수지(V=400m³) 1개소	22,741	12,065	10,676	2022. 11.24.	2022.11.28~ 2026.12.22.	□□□□(주) 000 ■□■□(주) 000	공정률 2%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군 ☞☞☞☞☞에서는 “@@@(@%, \$\$)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시 혼합골재(00,000m³)를 구입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비 00,000천 원⁴⁾을 과다 반영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4) 사급자재 금액 000,000천원(00,000m³×00,000원×제경비×부가세×낙찰율)과 관급으로 전환시 금액 000,000천원(00,000m³×00,000원×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낙찰율)의 차이로 산출

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로 발생한 폐도(廢道, 폐지된 길) 구간 상수도 관로 매설(L=000m, B=0.0m)에 대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가 필요 없는데도 절삭후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를 반영하여 사업비(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포함) 0,000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혼합골재 직접구매 미반영 등으로 공사비 00,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급자재로 계상된 혼합골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용역)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용역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	▲▲ ▽▽	하수처리장1개소 오수관로 3.5km	1,894	2021.12.23.	2021.12.30. ~ 2023.12.19.	□□□□(주) ○○○	공정율 21%
●●처리구역 외 하수관로정비 외 1개지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외 4	▷▷ 외 7	감리용역 1식	2,147	2021.08.17.	2021.08.23. ~ 2024.06.11.	(주)◇◇ ○○○ 외 2개사	공정율 27%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5)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흠막이 지보공 등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⁶⁾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는 상기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 등 공사관리·감독 부적정

□□군 ○○○○○○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표 2]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 수행현황

일 자	내 용	비 고
'22.05.03		
'22.05.26		
'22.05.31		
'22.06.09		
'22.06.17		
'22.06.20		

※ □□군 제출자료 참고 작성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2.5.3.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가설울타리 규격(높이 4.0m, 연장 128m)이 설계도서(높이 2.4m, 연장 50m)와 상이한데도 그대로 접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 감사일 현재 현장 확인결과 설치위치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와 상이하게 설치하였으며 변경사항이 발생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군 △△면 ▲▲리 250번지 가설사무소 부지에 가설울타리(높이 1.2m, 연장 50m)를 설계도서(높이 2.4m, 연장 50m)와 상이하게 설치하였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실정보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시정(감액 0,000천 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사진 1]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 및 현장사진

안전관리계획서 도면	현장 설치현황

3. 시공계획서 검토 업무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비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되,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 ○○○○○○○에서 2022.6.9.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결과로 도출된 ‘조건부 적정’ 내용 중 시스템비계의 조립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에 관련 보완사항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하도록 공문 통보하였으나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비계 시공 전 관련내용⁷⁾을 시공계획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 통보한 사실이 있다.

4. 가설공사(비계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7)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따라 가설비계의 안전성 계산서 및 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주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규모 하수처리장 가설(시스템비계)공사 현장 확인결과 [표 3] 및 [사진 2]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3]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스템비계 설치 지적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비고
①	비계 내측 수평부재(안전난간 미설치) 및 벽 연결재, 비계하부 수평연결재 다수 누락으로 근로자 추락위험과 비계구조의 불안정으로 전도위험 초래	
②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및 벽 이음설치 등 비계의 설치기준 미준수	
③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다수의 부재연결을 누락하여 불안정한 구조로 설치	
④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가 3분의 1 미만으로 설치되어 비계기둥의 기울어짐과 이탈위험 상존	

[사진 2] 현장사진

① 비계 하부 수평연결재 누락	② 비계 기초처리 부실
③ 비계 하부 안전망 설치 미비(낙하물 위험)	④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가 3분의 1 미만 설치로 비계 기울어짐 우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안전관리 업무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4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 \$\$\$\$\$에서는 “▣▣ ☆☆☆☆☆ 건립 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약	착공 (신고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 ☆☆☆☆☆ 건립 공사	업무시설 등 991.68㎡ 증축	\$\$\$\$\$ (21.4~23.4)	21.12.20	22.1.3 (22.4.21)	156	3,589	□□□□(주) (건축사사무소 ○○)	착공신고 108일지연

1. 건축기획 및 착공신고 등 사전절차 이행 부적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2]와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하여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건축기획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⁸⁾에게 의뢰

할 수 있으며,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및 공사수행방식 등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공공건축건립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 이하	필수	x	선택	선택
5천만원~1억원 미만	필수	x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우선적용)

또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권자와 협의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기획 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전에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건축사,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이거나 재직할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그런데도 ■■군 \$\$\$\$\$\$에서는 “■■ ☆☆☆☆☆☆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기획 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착공 전에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으나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22. 1. 3. 공사를 선 착공 후 108일이 지난 같은 해 4. 21. 에서야 착공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공사계약을 의뢰 받아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축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건축기획 업무 미이행 및 착공신고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사업비 및 안전관련 설계도면 검토 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추락,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동식비계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⁹⁾,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¹⁰⁾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

9)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10)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썰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군 \$\$\$\$\$\$에서는 “■■ ☆☆☆☆☆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 하도록 하며, 이동식 비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이번 감사기간(2023. 4. 17.~21.) 중 위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및 공사현장 출입 통제시설이 미흡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고,

천장 배관공사와 마감공사를 위해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경우 아래 [그림 2]와 같이 바닥 타설 이후 바닥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비계다리를 견고한 시

설물에 고정하거나 비계바퀴에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이동식비계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1] □□ ☆☆☆☆☆ 안전난간 등 부적정 시공 현황

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공사현장 출입통제 부적정
테라스 끝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정리(가연성 폐기물 방치) 부적정

[그림2] 이동식 비계 설치 부적정 현황

이동식 비계설치 메뉴얼	아웃트리거 미설치

※ 「이동식 비계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 ☆☆☆☆☆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상에 가설사무실 2개소와 가설창고 1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장 여건 상 가설창고 1개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설울타리 역시 15.4m

를 미시공 하였으나 2023. 4. 21. 감사일 현재 설계변경이나 감액을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가설사무소 및 가설올타리 미설치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심의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 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군 \$\$\$\$\$\$에서는 “■■ ☆☆☆☆☆☆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자인 ◇◇◇◇◇◇◇◇가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면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보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성과품을 승인하였고, 공사를 입찰 시에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기후변화요인 및 주 5일 근무제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령 기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시고,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시 관계 법령 규정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